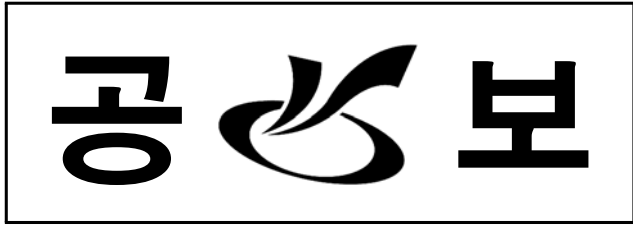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2호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44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7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77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8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89호 공시송달공고	1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93호 재결서정보 공시송달 공고	2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2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902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3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9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2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44호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사 업 명 : 범우연립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 2. 사업주체 : 범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정두욱
-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7-25번지
 - 나. 대지면적 : 2,999.6㎡
 - 다. 연 면 적 : 12,722.190㎡
 - 라. 사 업 비 : 18,917,259,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23층 / 1개동 / 91세대
- 4. 사업기간 : 2006.09 ~ 2008.11
- 5. 사업시행인가일 : 2006.05.25
- 6. 변경사항
 - 가. 사업기간 : 2006.09 ~ 2008.08 ⇒ 2006.09 ~ 2008.11
 - 나. 사업비 : 17,953,057,000원 ⇒ 18,917,259,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7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나진포천하천정비공사 1,2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사 업 명 : 나진포천하천정비공사 1,2차
-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3. 공 고 기 간 : 2008. 10. 15 - 2008. 10. 29 (15일간)
-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서구청 건설과
-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남상신	인천 서구 마전동 568-4	1차
지병국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01-2	2차
지성환	미합중국 네덜랜드 20878 게이더스버그시 리닝오크가 5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77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I. 공고내용

1. 정비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명칭 : 신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3. 사업주체 :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
4.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번지의외 3필지
(264-5, 273-9, 273-10)
 - 나. 대지면적 : 163,872.70㎡
 - 다. 연 면 적 : 565,353.811㎡
 - 라. 사업규모 : 36개동 3,331세대
5.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54개월

II.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III.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34, FAX 032-560-4719)
 2. 서구 신현원창동주민센터(032-560-3104, FAX 032-560-3118)
- ※ 공람 공고 내용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과정에서 내용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88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2009년도에 시행될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용어 정비('주거용부동산' 을 '주택' 으로 일괄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인용조문 수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제1호와 중복 감면규정 정비)
- 누락사항 반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 수정
- 근거법률 명칭변경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가” 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가” 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제16조 중 “사업용” 을 “아파트형 공장용” 으로 한다.

제17조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18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로 한다.

제21조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 을 “물류산업지원” 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u>주거용 부동산</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 <u>주택</u> ----- ----- ----- -----.</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략) 3. <u>건설교통부</u>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략)</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u>국토해양부</u> ----- ----- 4.~7 (현행과 같음)</p>
<p>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생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 ----- -----<u>국토해양부장관</u> ----- ----- -----.</p>

현 행	개 정
<p>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제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u>사업용</u>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p>	<p>----- ----- -----.</p> <p>1.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u>아파트형 공장용</u> ----- ----- -----</p>

현 행	개 정
<p>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 ----- -----.</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2. (생략)</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주택-----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 ----- ----- ----- ----- -----.</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p>	<p>제21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현행	개정
<p>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89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김철오 62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0. 21 ~ 2008. 11. 04(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8년 11월 04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 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자동차의무보험 부과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납부지역	주소	시유	회차	비고
1	00023017	김철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5번지 3호 17동 2반 보성빌라 3동 103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	00023036	김래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0번지 16호 8동 1반 예성아트빌 나동 802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3	00023038	방명학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43번지 24호 13동 1반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4	00023062	김복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번지 104호 32동 6반	주소불명	9-2회차	부과예고
5	00023074	이덕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6번지 58호 30동 5반 세종빌라 나동 802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6	00023094	장진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번지 26/4 계산하이베라스 오피스텔 B동 801호	수취인불명	9-2회차	부과예고
7	00023095	이종광 외이사(채권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06번지 22/7 불로e-편한세상 107동 303호	주소불명	9-2회차	부과예고
8	00023098	이미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동 4반 주공아파트 122동 2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9	00023099	정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8번지 1호 3동 7반 동남아파트 4동 310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0	00023108	이선옥,김성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번지 11호 35/1 문성하이츠빌라 디동 2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1	00023123	(주)한별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270호	수취인불명	9-2회차	부과예고
12	00023168	최문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88번지 5호 15동 2반 은영엔빌 B동 3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3	00023189	이상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2번지 48호 31동 2반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4	00023194	변관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번지 37동 6반 신현대아파트 703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5	00023229	손미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3호 18동 8반 보광아파트 101동 908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6	00023235	이영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3번지 21동 1반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1동 1702호	수취인불명	9-2회차	부과예고
17	00023242	유민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5번지 6호 1동 2반 대신빌라 2동 202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8	00023245	김용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5번지 6호 19동 3반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19	00023256	최정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67번지 12동 5반 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111동 1503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0	00023261	진금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0번지 18호 12동 3반 금잔디빌라 9동 8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1	00023334	권혁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9번지 4호 5동 1반	주소불명	9-2회차	부과예고
22	00023358	김도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번지 19호 30동 5반 공작아파트 나동 609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3	00023359	최동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6호 4반 금호어울림아파트 103동 1102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4	00023362	이범양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82번지 4동 5반 가전빌라 가동 802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5	00023365	김광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동 2반 주공아파트 120동 104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6	00023368	박숙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2번지 70호 15동 1반 현광빌라 라동 3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7	00023405	(주)한별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번지 270호	수취인불명	9-2회차	부과예고
28	00023406	이종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8호 18동 3반 중앙빌라 B동 301호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29	00023409	김문석(채권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번지 5호 29/2	폐문부재	9-2회차	부과예고

30	00023417	진명훈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340번지 10호 2동 2반 상모빌라 B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1	00023423	정대선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148번지 3호 30동 6반 신명아파트 102동 410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2	00023445	문재공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1번지 19동 1반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3	00023449	김동근	인천광역시 서구 불노동 불로지구 39블럭 23/6 불로코호 어울림 106동 1003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4	00023459	한미애	인천광역시 서구 감양동 595번지 3호 11동 4반 서해그린빌 104동 11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5	00023463	이경미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278번지 4호 21동 1반 상화연립 다동 2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36	00023479	양봉성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89번지 3호 18동 3반	수취인불명	9-2호차	부과예고
37	00023511	김화성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번지 55호 9동 2반 태화아파트 1동 809호	이사	9-2호차	부과예고
38	00023523	양인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35번지 1호 17/2 연진아파트 103동 302호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39	00023536	박수양 ☎463-722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71 상모해피하임 303동 1304호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40	00023542	문용권 ☎574-0677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171번지 3호 3/3 아주아파트 비동 506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1	00023572	최광식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563번지 6호 10동 5반 상합빌라 6동 102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2	00023586	김철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5번지 3호 17동 2반 보성빌라 3동 103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3	00023588	배진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63번지 5호 2동 1반 대성연립 가동 206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4	00023600	(주)서광플랜드 T.564-713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7번지 8호	수취인불명	9-2호차	부과예고
45	00023606	이재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28번지 16/4 퀘스타운 동성아파트 203동 2003호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46	00023624	박진성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6번지 20호 43동 3반 은하마을 2동 4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7	00023629	양준홍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6번지 55호 23동 1반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8	00023634	최범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59번지 13호 16동 5반 대동빌라 18동 1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49	00023654	정영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7번지 15호 41동 1반 무궁화빌라 B동 402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50	00023669	윤양일 T.578-5692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331번지 1동9반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51	00023671	황미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번지 14호 28동 4반 하나아파트 204동 202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52	00023693	조희옥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147번지 2호 29동 3반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53	00023699	노화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8번지 8호 25동 3반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54	00023707	구창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동 1반 이지미래지향아파트 101동 802호	수취인불명	9-2호차	부과예고
55	00023721	김흥연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4번지 1호 1동 1반	수취인불명	9-2호차	부과예고
56	00023727	박윤희외1인(김귀성)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90번지 70호 3/6 힐빌아트빌 1동 4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57	00023729	김호연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424번지 1호 1동 1반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58	00023735	이상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번지 3호 18동 8반 보광아파트 101동 908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59	00023737	전용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08번지 8/5 월드아파트 112동 1203호	주소불명	9-2호차	부과예고
60	00023751	지찬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0번지 8호 8동 1반 경일탑스빌 103동 301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61	00023755	위찬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6번지 24동 5반 한신그랜드힐빌리지 29동 506호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62	00023762	신명일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372번지 2호 26동 4반	수취인불명	9-2호차	부과예고
63	00023783	위주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5번지 27호 25동 4반	폐문부재	9-2호차	부과예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관련조항 개정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08.2.29)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 」) 사용

3.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로, 동 조례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한다.

-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조례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1.1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75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032)560-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국(군·구)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수정안	기존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p> <p>[1996.10. 4 조례 제411호] 개정 2001. 3.27 조례 제650호 2004. 6.18 조례 제763호 2007. 6.19 조례 제893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27, 2004. 6.18, 2007.6.19)</p> <p>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제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1. 3.27, 2004. 6.18)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개정 2001. 3.27)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전문개정 2004. 6.18]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개정 2001. 3.27)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 6.18)</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p> <p>[1996.10. 4 조례 제411호] 개정 2001. 3.27 조례 제650호 2004. 6.18 조례 제763호 2007. 6.19 조례 제893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27, 2004. 6.18, 2007.6.19)</p> <p>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제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1. 3.27, 2004. 6.18)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개정 2001. 3.27)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전문개정 2004. 6.18]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개정 2001. 3.27)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 6.18)</p>

기존 조례	수정안
<p>㉔위원장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18)</p> <p>③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3.27, 2004. 6.18)</p> <p>④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4. 6.18)</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6.18)</p> <p>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04. 6.18)</p> <p>③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3.27, 2004. 6.18)</p> <p>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4. 6.18)</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 6.18)</p> <p>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기존 조례	수정안
<p>④ (삭제 2004. 6.18)</p> <p>제6조 (삭제 2004. 6.18)</p> <p>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6.18)</p> <p>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임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 수 있다. (개정 2001. 3.27)</p> <p>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3.27)</p> <p>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04. 6.18)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04. 6.18)</p> <p>제6조 (삭제 2004. 6.18)</p> <p>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6.18)</p> <p>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임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 수 있다. (개정 2001. 3.27)</p> <p>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3.27)</p> <p>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04. 6.1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기존 조례	수정안
<p>제1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자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4. 6.18]</p> <p>제13조(수당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7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8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자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4. 6.18]</p> <p>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7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8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93호

재결서정보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38호선, 중로3-45호선, 사업명: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사업명 :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도로 신설공사
- 2. 사업시행자 : 당하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조합
- 3. 공고기간 : 2008. 10. 22. - 2008. 11. 05.(15일간)
- 4. 재결서 정보 수령장소 : 서구청 건설과
-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비고
김영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13-502	
외환신용카드(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관계인
(주)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관계인
국(강남세무서)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	관계인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을지로 1	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관계인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 목동로 75	관계인
이상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1. 개정이유

- 기존의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상의 정책위원회 및 정책기획단, 사이버구정연구소 기능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구 자문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이버구정연구소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규정
-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사이버구정연구소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기획홍보실장,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기획홍보실 Fax 032-560-404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선진서구 건설을 위한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적인 시각의 정책사업 발굴 추진
3. 구정 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시 정책방향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한다.

- 1.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 2. 지역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지방공무원으로 5급이상, 전직 지방의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지방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 간사는 기획홍보실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기획단

제10조(설치) 제2장에 따른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11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2명 이내의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의 개발·조사·분석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단장 등) ① 단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임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전문위원의 채용) ① 전문위원의 채용에 관한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4조(보수 등)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회의) ① 기획단의 회의는 월례회의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전문위원은 당해년도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① 구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기획단 및 관계공무원의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현안 등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문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총위원	명	참석	명
		불참	명
안 건			
회의결과 불임과 같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함 년 월 일			
직	책	성	명(날인)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			
"			
"			
"			
"			
"			
"			
"			
"			
"			

회의결과

1.

○

○

2.

○

○

3.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902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건축허가 위치	건축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도로지정 및 규모	비고
인천서구 왕길동 119-3번지	김 점 훈	왕길동 119-3번지 도로폭 미달로인한 도로후퇴부분	도로너비:6.0m 도로길이:35.8m 도로면적: 82.0㎡	

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2)에 비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9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안 제1조, 제3조, 제13조)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안 제4조, 제5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2조, 제6조, 제7조)
-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 국정홍보처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구청장 【참조: 기획홍보실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기획홍보실 Fax

032-560-404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령” 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보사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제3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 를 각각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국정홍보처장”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의2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 을 각각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 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 단서 및 제5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 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91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안 제1조, 제2조)
-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 (안 제1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3조, 제4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1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기획홍보실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기획홍보실 Fax 032-560-404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및 제18호 중 “재정경제부” 를 각각 “기획재정부” 로 한다.

제11조제40호 중 “농림부” 을 “농림수산식품부” 로 한다.

제26조제84호 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 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실·과명의 재무과란 제31호 중 “재경부” 를 “기획재정부” 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97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97조제6항제2호 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

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